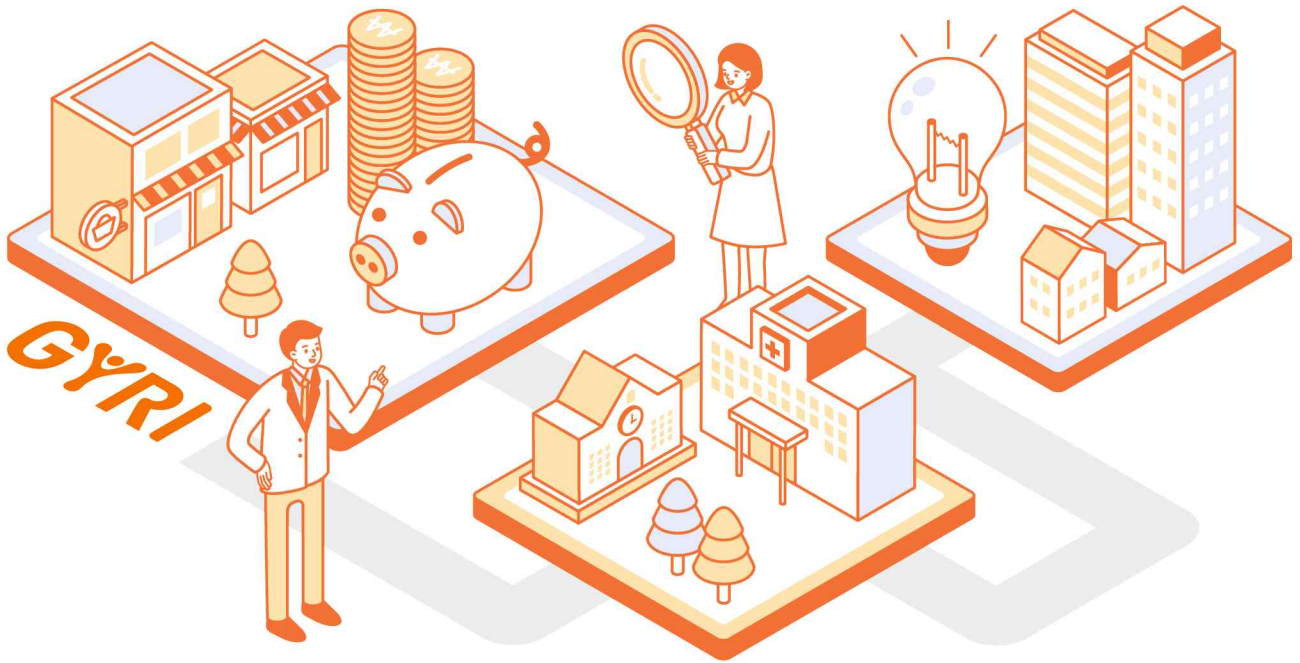


이슈 Issue Brief 브리프

17

고양시 인재개발원 설립 방안



발행일 2022년 8월 12일
발행인 정원호
발행기관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 www.goyang.re.kr.

연구책임자
김형성(hskim@goyang.re.kr)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재형(kjh830227@goyang.re.kr)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본보고서
 보고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저자: 김형성
 발행일자: 2021년 7월 26일

요약

- 0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나, 교육훈련기관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음. 특히, 특례시의 경우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규모에서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특례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함
- 02 고양시 공무원의 교육수요는 7급 공무원의 역량교육과 융합교육에 있으나,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이에 미흡함. 또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역량은 경기도의 전체 공무원 인력을 담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인데, 의무교육인 신규자 과정 참여인력도 전체 44.1%에 불과하였음. 이에 따라 특례시에 교육훈련기관 설치 권한을 주기위한 「지방분권법」개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음
- 03 고양시에 인재개발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모듈형 교육 방안 구축, 지역특화 교육 및 선택적 교과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재개발원의 조직체계는 단·중기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인적자원과를 분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과를 교육기획과와 교육운영과로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01

공무원 교육훈련 법제도 현황

• 「지방자치법」 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동법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내 지방공무원 교육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는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 장의 역할의 한계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강행 규정), 6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의 수립·시행(임의 규정)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지방공무원의 직접적인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음
-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0호)」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단체의 경우, 6급 대상 장기교육과정을 수립·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훈련 인력 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음

〈공무원 대상 교육제도 현황〉

구분	내용	법 내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 이상 지방공무원 6급 승진후보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기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2항 1목 동법 시행령 제10조 2항 2목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기관 설치 6급이상(6급 승진후보자 포함),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장기교육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8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수립 6급 이하 지방공무원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직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9조 제1항 법 제1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 사무범위에 대한 심각한 침해 발생

-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교육훈련기관 설립을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
- 설혹 규모나 역량 등에 한계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해줄 수 있으나, 「지방분권법」을 통해서 특례시로 지정되고 정원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 특례시의 경우,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특례도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왜냐하면, 특례시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규모가 유사하며, 다양한 특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특례시만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 증대가 시급하기 때문임

02

고양시 인재개발원의 필요성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과목의 고양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수요 반영 미흡

- 고양시 지방공무원들은 고양시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역량교육과 고양시에 특화된 융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음
 - 첫째, 직급별 역량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동안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했던 7급 차석들의 역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역량교육 필요성을 제기

〈고양시 7급 공무원의 책무와 작업〉

책무(duty)	작업(task)
유관기관 협업	부서간 협업
민원관리	민원대응
정책기획·관리	자료조사 관리
	사업진행
성과관리	지사사항 이행
	팀 관리
재정관리	예산관리
	사업진행 관리

- 둘째,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① 환경비용 및 미래의 안전한 삶 과목(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도시안전, 소방 및 재난관리, 교통, 주택, 녹지경영, 물환경, 기후 및 환경, 농수축산업을 융합한 교과목), ② 도시 브랜드 과목(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도시재생, 문화콘텐츠, 관광체육, 주택건설, 녹지정책을 융합한 교과목), ③ 정책 기획 과목(정책기획을 중심으로 산업진흥, 일자리, 재정기획, 정보기획, 지방의회, 감사를 융합한 교과목), ④ 시민 복지 과목(시민복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여성가족, 시민보건을 융합한 교과목)

- 위와 같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인재교육원의 교과목은 특례시, 특히 고양시에 특화된 교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융합교과목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경기도 공무원 교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역량

-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역량은 경기도 전체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 전문교육과정의 교육은, 비록 의무과정은 아니지만, 경기도 전체 교육대상자 중 55.9%를 교육하고 있음. 경기북부의 경우, 그 참여비율이 남부에 비하여 낮는데, 고양시의 경우는 경기북부에서도 낮은 수준임

〈경기도인재개발원 전문교육 과정 참여비율〉

구 분	전문교육과정 참여비율(%)		
	2019년	2020년	평균비율
경기도 전체	58.1	53.7	55.9
경기도청	91.7	88.5	90.1
경기북부	39	44.6	41.8
경기남부	48	48.6	48.3
고양시	26.4	47.4	36.9

- 무엇보다 신규자 교육은 신규자 전원이 교육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 신규자 중 44.1%에 불과함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규자과정 참여비율〉

구 분	신규자교육훈련 비율(%)		
	2019년	2020년	평균비율
경기도 전체	41.9	46.3	44.1
경기도청	8.3	11.5	9.9
경기북부	61	55.4	58.2
경기남부	52	51.4	51.7
고양시	73.6	52.6	63.1

03 고양시 인재개발원 설립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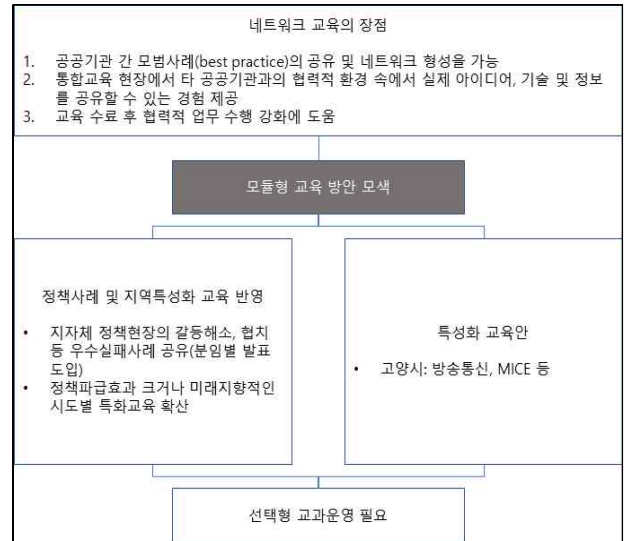
• 특례시 특례사무에 대한 논의 현황

- 특례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법」제41조에 다음과 같은 특례가 주어질 예정임
 - 「지방공기업법」 등 10개 법률, 12개 사무가 특례사무로 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 가운데 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기능의 특례가 인정될 예정임
- 또한 특례시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국회 심의 중인 9개의 「지방분권법」 개정안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설치 권한을 기존 사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음

• 고양시 인재개발원 방향

- 고양시는 규모가 어떠한 타 특례시와 다르게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고양인재교육원 운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육훈련 기관의 기반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음
- 고양시 인재개발원이 설립된다면, 경기북부의 유일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일 것이므로 고양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대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북부의 타 자치단체 공무원을 배제하고 고양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양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할 경우, 인식의 확장 측면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중앙, 경기도, 타 자치단체와의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훈련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특례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며, 특례시 간의 거리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듈형 교육방안을 구축하고, 지역특화 교육 및 선택적 교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장점 및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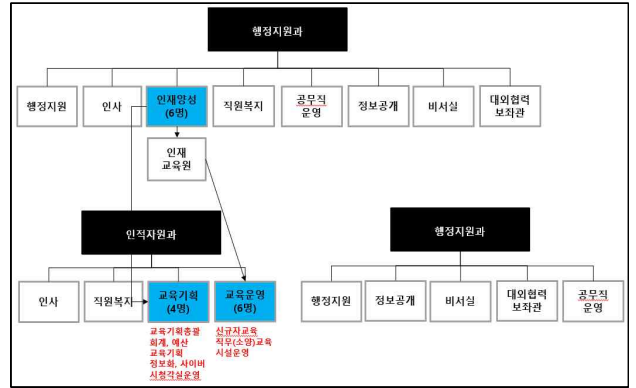


- 협업교육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사전에 교육내용을 공지하여 교육생들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인력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를 오픈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고양시 인재개발원의 오픈 모듈형 교육방안〉

사전 교육(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지방자치, 지방재정, 행정법 등의 직무기초 교육에 대한 사전 온라인 교육 선택형으로 운영
강의실 교육(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자치단체에서 집합교육 직무가치를 제외한 교육 실시(직무가치는 온라인 사전교육으로 운영) 지방자치 최신이슈에 대한 교육 강화
현장학습(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특례시'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지역별 특화 사업 위주의 교육 실시
강의실 교육(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자치단체에서 집합교육 동료들과 그동안의 학습내용을 중 정리하고 이를 실제 사례와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함

〈고양시 교육훈련기관 운영부서 개편-단·중기 안〉



-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교육기획과와 교육운영과로 분리하고, 인력도 과장을 포함하여 27명으로 확대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04

정책제언

• 고양시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중장기 이행일정

○ 고양시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행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고양시 인재개발원 설립 일정〉

추진단계	추진목표	추진내용
준비기 (2023년)	교육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 지침 개정 및 예산반영 인재교육원 조직 및 인력, 시설확충 특화교육 교과목 설계 자치단체간 협의
1단계 목표 (2024년 ~2025년)	시범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의 교과목으로 시범실시 과정 평가와 환류 확대실시계획 수립
2단계 목표 (2026~2027년)	사후관리 및 교육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분야 확대 및 확대 실시 타 자치단체에 홍보 및 참여확대

○ 가장 우선적으로 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하여 단·중기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인적자원을 분리·신설할 필요가 있음

〈고양시 교육훈련기관 운영부서 개편-장기 안〉

